

재정운영위원회 규정

규정 · 소관 재무처 · 현행 규정

개정 2022. 3. 7. · 시행 2022. 3. 7. (현행 판)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38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8:30:33 ·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확립하고 각종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정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재정운용계획의 수립
2. 재정운용에 관한 지침과 기준 작성
3. 자금 투자에 관한 사항
4. 교내 각종 사업에 따른 재무적 분석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는 부총장, 기획처장, 재무처장, 재무팀장, 예산팀장, 대외국제팀장, 결산담당자, 단과대학장(1)과 관련 분야의 전공교수 혹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총장, 서기는 재무처장이 한다. <개정 2016-03-01>
-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금융정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임기)

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.

제6조(회의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회의는 위원장이 매학기 1회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/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2/3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서면결의)

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8조(소위원회)

재정운영에 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재정확충위원회와 재정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7-03-01>

제9조(재정확충위원회)

- ① 재정확충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수입재원 마련 논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② 재정확충위원회의 위원은 부총장, 법인실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, 재무처장, 예산팀장, 재무팀장, 대외국제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관장한다.

1. 기부금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정책
2. 수익사업 모델 개발 및 운영 방안
3. 유휴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

〈신설 2017-03-01〉

제10조(재정실무조정위원회)

① 재정실무조정위원회는 재원별 원활한 자금 예측과 운영을 담당한다.

② 재정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재무처장, 재무팀장과 자금 담당 직원 1인, 예산팀장과 예산 편성 담당 직원 1인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재무처장으로 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.

〈신설 2017-03-01〉

제11조(관계부서의 협조)

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제반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(사무관장)

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처 재무처에서 관장한다.

제13조(회의록 작성)

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14조(기타)

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